

<별표 15> <개정 2011.1.24., 2020.1.15.>

보험가입금액의 산정(제7-67조관련)

보험업감독규정 제7-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.

1. <삭제 2020.1.15.>

2. <삭제 2020.1.15.>

3.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은 일반사망보험금으로 한다. <개정 2020.1.15.>

4. <삭제 2020.1.15.>

5. <삭제 2020.1.15.>

6. 유족연금 등과 같이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보험은 기준연령 요건으로 가입하여 중간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하여 지급되는 보험기간별 보험금액 중 최저 보험금액으로 한다.

7. <삭제 2020.1.15.>

8. 제3호는 체증 또는 체감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0.1.15.>

9.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령 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. <개정 2020.1.15.>

보험가입금액 = (위험보험료/사망만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보험(이하 "정기보험")의 위험보험료) ×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

다만, 정기보험은 해당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기간 기준으로 적용하며, 위험보험료 계산시 다음의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- 위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험금을 위한 부분
- 특정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위한 부분
-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위한 부분